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881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및 제65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생 략)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집행한다. ----- ----- ----- -----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생략) 제65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⑤ (생략)	⑧ ----- 교정시설등의 장----- ----- ----- -----. ⑨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 교정시설등의 장-----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이수명령이 징

역형 이상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항·제6항 >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행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및 제18조1)에 따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혹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르면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대상자로서 법원의 판결로 피치료감호자가 되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현행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수명령은 치료감호 집행기간 종료 후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이 형 집행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게 됨.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치료감호 기간에도 이수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가 조기에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복귀 후 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수명령을 이행하게 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²⁾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포함(2024. 1. 16. 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이수명령이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